

# 「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 · 정지원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 ·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원섭 · 김재우 · 김정도 ·  
신용하 · 이상호 이정희 · 이지연 · 장미경 의원(11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종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원활한 경관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5조)
-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5조)
-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~제22조)
-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~제24조)
-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~제34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경관법」
  - 「경관법 시행령」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7. 8. ~ 7. 13.) 결과 의견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종전 조례를 보완하여 원활한 경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,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,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심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상위법인 「경관법」이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조례 정비가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음. 앞으로는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